

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

「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

[장인수 의원 대표발의]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해당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연번	해당 자치법규	인용조문 개정내용
1	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	지방자치법 제33조 → 제40조 등
2	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	지방자치법 제41조 → 제49조 등
3	오산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	지방자치법 제42조 → 제51조 등
4	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	지방자치법 제41조 → 제49조 등
5	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	지방자치법 제38조 → 제46조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2년 1월 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

(장인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8-634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12월 30일

발의의원 : 장인수, 김영희, 김명철, 이상복,
성길용, 이성혁, 한은경 의원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해당조례의 인용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연번	해당 자치법규	인용조문 개정내용
1	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	지방자치법 제33조 → 제40조 등
2	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	지방자치법 제41조 → 제49조 등
3	오산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	지방자치법 제42조 → 제51조 등
4	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	지방자치법 제41조 → 제49조 등
5	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	지방자치법 제38조 → 제46조

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개정조례안

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「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 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 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관하여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관련 별표 5”를 “관하여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를 “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”로, “법 제117조”를 “법 제131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법 제146조”를 “법 제163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법 제104조제2항”을 “법 제1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13조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9조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법 제41조”를 “법 제49조”로, “「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」”를 “「오산시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조(「오산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중 “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”를 “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법 제117조 및 제120조”를 “법 제131조 및 제134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146조”를 “법 제163조”로 한다.

제4조(「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”를 “오산시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」의 개정) 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**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오산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 내지 제116조에 따른 오산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</p> <p>3. 오산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·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(다만,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----- ----- 제126조부터 제129조 까지----- ----- 법 제131조----- -----</p> <p>3. ----- 법 제163조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법 제117조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법 제41조에 따른 현지확인,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,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, 증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그 현지확인일, 서류제출일,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11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·② (생략)
③ 법 제41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「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」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.

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 ① ----- 법 제13조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 ① 법 제49조-----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49조-----

----- 「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조례」-----

오산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범위) ① 오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나 위원회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출석·답변할 수 있다.</p> <p>1. 법 제117조 및 제120조에 따른 시 소속 하부행정 기관의 장</p> <p>2. 시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·본부장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51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제126조부터 제129조 까지----- 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법 제131조 및 제134조----- ----- ---</p> <p>2. ----- 법 제163조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**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u>오산시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 조례</u>	<u>오산시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 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 령 제44조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하 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 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 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, 감정인 및 참고인(이하 “증인 등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지방자치 법」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**오산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
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로 의정 및 오산시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